

第109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2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鐘路區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財政運營狀況의 公開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5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住民所得支援및生活安定基金運營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8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公共施設內의新聞·福券販賣臺,賣店및食飲料用自動販賣機設置契約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公衆化粧室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6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1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廢棄物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4面
8. 서울特別市鐘路區收入證紙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8面
9. 都市計劃用途地域·地區變更決定(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31面
10. 都市計劃事業(道路)保留決定에 따른 再檢討(案)에 대한 意見聽取의 件 結果報告書	34面
11. 區政質問에 대한 答辯의 件	36面

1.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報告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민행정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시와 자치구 간 업무의 일관성 및 공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간 도시관리국 소속 도시계획과에서 처리해 온 업무 중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행정관리국 소속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생활복지국 소속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여온 가스시설 및 난방시공업 업무가 전문건설업에 통폐합되어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로 이관하여 처리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국 분장사무 이관

-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제7조제2항제8호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관리국 분장사무 중 제4조제2항제43호에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신설
- 생활복지국 분장사무 중 제6조제2항제17호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건설교통국 분장사무 중 제8조제2항제24호에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

다. 개정근거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협조(서울시 조직12200-65, 2001. 1.17)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계획(총무12200-120, 2001. 1.31)
-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결과에 따른 업무이관(지경58110-202, 2001. 1.31)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무질서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함에 있어 시와 자치구 간 업무의 일관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를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에서 행정관리국(자치행정과)으로 이관하고
- 생활복지국(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해오던 가스시설 시공업 업무가 '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전문건설업에 통폐합되었으므로 전문건설업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건설교통국(건설관리과)으로 이관하기 위함

나. 주요 골자

- 도시관리국 분장사무 중 “옥외광고물 관리 및 도시경관 개선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행정관리국 분장사무에 신설(안 제7조제2항8호, 안 제4조제2항제43호)
- 생활복지국 분장사무 중 “가스시공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건설교통국 분장사무에 신설(안 제6조제2항제17호, 안 제8조제2항제24호)

다.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계획

○ 관련근거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 협조(서울시 2001. 1. 17)

○ 조 직

- 기 구 : 1팀(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광고물관리팀)

- 인 력 : 9명(일반직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3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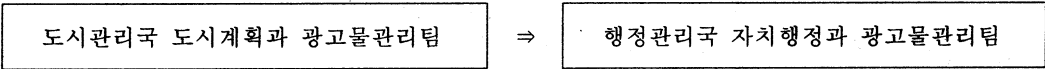
○ 주요기능

- 광고·간판·전단류 등 광고물정비 종합계획 수립 후 시행

-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광고물 전수 조사

○ 기구조정 계획



※ 서울시의 옥외광고물 정비·관리부서 조정 계획 : 주택국 건축지도과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라. 건설업의 업종구분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일 반 건 설 업	전 문 건 설 업
1. 토목시공업 2. 건축시공업 3. 토목건축시공업 4. 산업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산업 3. 미장방수공사업 27. 가스시설시공업(1,2,3종) 28. 난방시공업(1,2,3종) 29. 시설물유지관리업

※ 가스시설시공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무는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분장사무로 되어 있음

마. 검토의견

○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 및 가스시공업 등록업무에 대한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처리 부서의 일관성 및 법 처리의 일관성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유 찬 중 위원, 선 상 선 위원, 최 강 순 위원, 김 정 대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시와 자치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정비·관리업무와 가스시공업 업무를 자치행정과와 건설관리과로 이관한다고 했는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와의 업무 일관성보다는 먼저 해당과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답) 의회에 개정조례(안)를 제출하기 전에 과 단위의 내부적인 의견조율이 이루어졌고, 구의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조례(안) 심사시 국 단위의 조율과 합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문)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 및 무허가 건수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현재 우리 구에는 2만 6,000여 건의 옥외광고물이 있습니다. 그 중 적법한 것이 1만 6,000여 건이고 불법광고물이 9,942건입니다.

문)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가 도시계획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되면 도시계획과의 광고물 관리팀이 모두 그대로 자치행정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까?

답) 예, 그렇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 공개제한에 있어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은 물론 주민의 불편·부담사항을 줄이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재정운영상황의 주민에 대한 공개제한 중 이미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및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제한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므로 삭제(안 제5조 중 제2호 및 제4호)
- 공개제한 대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업” 및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의사결정 과정 또는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및 “입찰계약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구체화(안 제5조 중 제1호 및 제3호)

다. 개정근거

- 2000년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주민 공개의 제한사유가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골자

- 제5조(주민 공개의 제한)

현 행	개 정 안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1. 의사결정과정 또는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2. 추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사업·정책으로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삭 제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3. 입찰에 따른 예가 등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삭 제

다. 검토의견

- 주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민공개 제한사유는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한 투명하게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므로 명확하지 못한 조항을 삭제 또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라.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조례(안)에서 삭제하려는 조항인 제5조제2호와 제4호 '공개될 경우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과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는 알겠으나, 개인보다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답) 공익도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무조정실 권고사항이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구 행정을 보다 투명성있게 해 나가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제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융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 설정”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융자금의 반환 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조항 삭제(안 제16조제1항제1호)

다. 개정근거

-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조례 내용 중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 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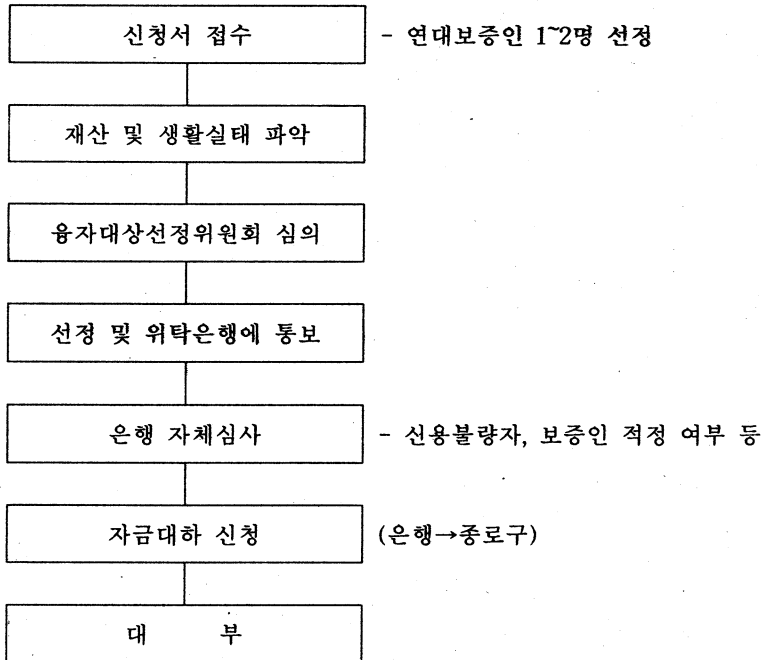
- 용자금 대부신청 시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는 1명, 재산세 3만원 이상 납부자는 2명의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조항 삭제(안 제6조제2항)
- 상환기한 전 용자금 반환사유 중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를 삭제(안 제16조제1항제1호)

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현황

(단위:천원)

기금총액	미 회 수 금			잔 액
	계	용자금	채납금	
1,059,142	787,342	644,500	142,842	271,800

라. 기금용자 절차



마. 상환기한 전 용자금 반환사유(조례 제16조)

-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 규제내용이 주관적이며 비현실적이므로 삭제
-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 자금을 용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 용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바. 검토의견

- 용자금 대부신청시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은 채납 발생시 원만한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이나
- 이를 삭제하고 수탁은행 자체의 대출요건에 맞는 보증인을 세우도록 할 경우 조례시행규칙 제7조 제3항 및 위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제1항에 의거 대부금은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결손부담을 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손부담이 없는 수탁은행에서는 기금관리에 다소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사. 관련법규

- 조례시행규칙 제7조(기금관리의 위탁)
- ③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정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 중 용자받은 대부자가 연체하였을 시 대부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납부독려 및 압류절차에 의거 압류조치 등 사후 관리해야 하며, 사후관리된 대부금은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는 결손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
-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대하 및 운용에 관한 약정서 제6조(대하금의 원리금 상환)
- ①“을”은 대하금을 용자받은 대상자들로부터 대부금 상환기일에 대부금을 회수하여 대하금 원리금을 대하일로부터 4년(2년 거치, 년1회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단 “을”은 용자받은 대상자들의 대부금이 대부금 상환기일에 상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하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대부자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납부독려 및 압류절차에 의거 압류조치 등 사후관리해야 하며, 사후관리한 대부금은 결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결손부담을 시키지 아니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홍 기 서 위원, 현 수 한 위원, 천 상 욱 위원, 유 찬 중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기금총액 10억 5,914만 2,000원 중 미회수금이 7억 8,734만 2,000원인데, 결손이 나더라도 수탁기관인 은행이 책임을 안 지므로 채납관리를 은행에서 직접 말도록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상환기간 전 용자금 반환사유인 제1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는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사항이 아닙니까?

답)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주관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을 투명

하게 하는데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이 기금이 소득사업을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가구주들도 지원이 되는 사항이라는 점도 있기 때문에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문) 현재 개정하려는 연대보증인 관련조항인 제6조제2항은 지난 '96년도에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1차 개정이 있었는데, 연대보증인 조항을 삭제해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까?

답) 은행에서도 기금을 내어줄 때도 자체적으로 보증인을 설정하기 때문에 구에서 보증인을 두도록 규정하면 구민에게 이중으로 보증인을 세우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주민에게는 불편을 줄여주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문)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항을 없애면 은행에서는 연대보증인 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결론에 책임을 지지 않게 동조례 시행규칙에 있는 은행과의 약정서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6조제2항을 삭제하려면 먼저 시행규칙에 있는 약정서의 개정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개정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수탁기관인 은행과 협의를 통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천상옥 위원 수정(안) 동의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제1항을 개정한 후 시행한다.”로 수정동의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발의년월일 : 2001. 3. 16

발 의 자 : 시민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종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조제2항을 삭제토록 한 것은 용자금 대부신청 시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을 경우 기금 결손발생시 구의 재정손실에 따른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를 개정한 후 시행되어야 타당하므로 부칙을 수정

2. 수정골자

○ 부 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수탁은행과의 약정서 제6조제1항을 개정한 후 시행한다.”로 수정

4. 서울특별시종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종로구규제개혁위원회에서 장애인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도록 통보된 조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보다 발전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신청 구비서류 삭제(안 제4조제2호)
- 사업의 의무사항 중 장애등급 2급이상인 자가 그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 대리인을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한정하고 설치계약 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개정근거

-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장애인 등에게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고 전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 골자

-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신청시 구비서류 중 장애인수첩, 생활보호대상자, 순국선열유족 등 우선 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삭제(안 제4조제3호)
-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로 한정하고
- 위탁운영할 경우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설치계약 신청서에 위탁인을 명시토록 함(안 제6조)

다. 검토의견

- 계약신청서류 중 장애인수첩과 생활보호대상자 여부는 구청(사회복지과) 자체에서, 그리고 순국선열유족 여부는 국가보훈처에 조회함으로써 확인 가능한 사항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주민 편의를 위하여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가 위탁운영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자동판매기 운영회사 등에 무단 전대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운영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등”으로 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계약자가 조례 제6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그에 따른 제재수단이 없어 조례 시행 상 실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최 강 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 제명에서 ‘매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그것은 공공시설 내에 있는 매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에게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내용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5. 서울특별시종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불필요한 행정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규정을 폐지 또는 개선하기 위하여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리 구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를 심의한 바, 사적재산을 침해하고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조항과 지나치게 사소한 내용은 주민들의 양식과 필요에 맡겨야 하는 사항이므로 우리 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공중화장실 범위 삭제(안 제14조)
- 부대시설 삭제(안 제5조)
- 관리인의 지정 삭제(안 제7조)
-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삭제(안 제8조)
- 유지·관리기준 삭제(안 제9조)
- 화장실의 개방 삭제(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 화장실의 개방 일부 개정(안 제10조제2항 및 제4항)
- 시설점검 삭제(안 제11조)

다. 개정근거

○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선언적인 규정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 골자

- 공중화장실의 범위 삭제(안 제4조)
-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 변기나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5조)
-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토록 한 규정 삭제(안 제7조)
-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토록 한 규정 삭제(안 제8조)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 삭제(안 제9조)
- 공중화장실에 대한 시설점검 규정 삭제(안 제11조)

다. 규제개혁 내용

규 제 내 용	정 비 사 유	정비내용
제5조(부대시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신체장애자용 변기를 설치하거나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임 ○ 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 지방자치법 제15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폐 지
제7조(관리인의 지정)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관리인을 지정하여 화장실의 청결유지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임	폐 지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또는 액체비누) 3. 탈취제 및 소독약품	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임	폐 지

규 제 내 용	정 비 사 유	정비내용
<p>제9조(유지·관리기준)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기준이 별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항상 청결을 유지할 것 2.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과 파리·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 번식을 방지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내·외부는 년 1회 이상 도색할 것 	<p>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임</p>	<p>폐 지</p>
<p>제10조(화장실의 개방)</p> <p>①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영업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p> <p>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방 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개방 화장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p>	<p>실효성이 없는 선언적인 규제임</p> <p>지나치게 사소한 내용을 조례에 실은 예로 폐지하고 주민들의 양식과 필요에 맡겨야 함</p>	<p>폐 지</p>
<p>제11조(시설점검)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에 대해 제8조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년 2회(상·하반기)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상위법령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규정임</p>	<p>폐 지</p>

라.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서 위임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와 실효성 없는 선언적 조항 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정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일 뿐 아니라 특히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 대비 청결히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체 관리 방안 등 보완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마.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 ①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 ③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이를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개정되는 공중화장실 조례(안)의 내용에는 화장지 비치 등 편의시설 부분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2002년 월드컵 행사 등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행사가 있음에도 이렇게 많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답)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하여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또한 삭제되는 내용이 사용자에게 대한 측면보다는 관리자에 대한 측면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화장실 청결운동에 부합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 공중화장실 관리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답) 현재 우리 구에는 고정식 6기, 이동식 38기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6. 서울특별시종로구오수·분노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2000년 제1회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규제사무로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조항 중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치기준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청소업자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시설기준이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수정하여 우리 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조항 개정(안 제18조제1항)
 -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을 발견한 때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

다. 개정근거

-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결과(2000. 9.28)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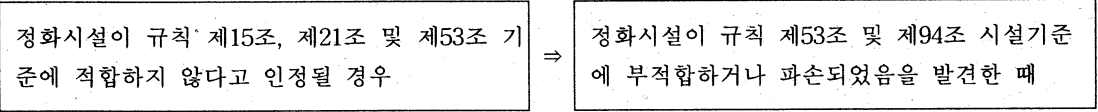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정화조 청소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 설치기준이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청소업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삭제하고 “시설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파손되었음을 발견한 때”로 수정하기 위한 것임(안 제18조제1항)

나. 주요 골자

- 정화조 청소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내용 변경



다. 관련법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제15조(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3과 같다.
- 제21조(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
 -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은 별표5와 같다.
- 제53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
 -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10과 같다.
- 제9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 ①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은 별표20과 같다.

라. 검토의견

- 정화조 청소업자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내용인 규칙 제15조, 제21조에 의한 정화조 설치기준의 부적합 여부는 전문지식이 없으면 식별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으로 실효성 없는 비현실적 규정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규칙 제53조(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기준)와 제9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구조 및 규격 등의 기준) 또한 청소업자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임에도 이를 다시 조례에 존치 또는 신설하는 것은 규제개혁 정비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다소 배치되는 조치로 판단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홍기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병만)

문)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밑의 오물까지 완전히 제거치 않고 청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환경미화원에게 샘플조사를 하도록 하여 시정이나 경고 조치를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는 방안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2000. 8. 6) 및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확정('99. 4.20, 2000. 9.28)으로 규제사무로 분류된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대형생활폐기물의 배출신고 제10조제2항제4호의 “배출 3일 전”신고 규정 삭제
- 제10조제3항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규정을 삭제
- 제10조제4항, 제5항에 5톤 미만 배출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신설
- 제11조제1항, 제2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 규정 폐지
- 제14조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년 2회에서 년 1회로 개정
- 봉투판매소의 지정(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제2항) 조항 삭제
- 게시관 부착의무(폐기물관리조례 제24조제3항) 조항 삭제

다. 개정근거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제6조제1항
- 제1회 종로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통보(기예05090-1318, 2000. 9.29)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심사 결과 규제사무로 분류된 조례의 일부 내용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대형 생활폐기물은 “배출 3일 전”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배출 3일 전” 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
제4호)
- 5톤 미만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신설(안 제10조제4항, 제5항)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규정 폐지(안 제11조)
-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2회 이상에서 년 1회 이상으로 함(안 제14조)
- 봉투판매소 지정시 고려할 사항 및 봉투판매소 지정표시판 부착의무 삭제(안 제24조제2항, 제3항)

다. 조문별 검토

-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 3일 전” 신고규정 삭제(안 제10조제2항제4호)
 -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 3일 전에 신고토록 하였으나 주민 대부분이 배출 시에 신고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배출 3일 전” 신고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현실에 맞는 타당한 조치로 사료됨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배출방법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을 삭제
(안 제10조제3항)
 - 삭제하여도 무방함
- 5톤 미만 배출되는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신설(안 제10조제4항, 제5항)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는 자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가 직접
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맡겨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0년 7월 22일 법시행
규칙 개정에 따라 배출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설된 내용임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관리규정 삭제(안 제11조)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배출지역 대상별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토록 하였으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6조가 '99년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2회 이상에서 년 1회 이상으로 조정(안 제14조제1항)
 - 규제개혁 차원에서 감독횟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1회 이상으로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2회 이상
점검할 수도 있으므로 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감독에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 인구, 면적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고 봉투판매소에는 지정표시판을 부착토
록 한 규정 삭제(안 제24조제2항, 제3항)
 - 현실성 없는 선언적인 규제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라. 검토의견

- 상위법령의 개정 및 규제개혁 정비 차원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5톤 미만 건설폐기물(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신설되어 배출자가 폐기물처리업자에 게 직접 운반하거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를 통하여 운반할 수도 있고, 또한 기존 방식대로 특수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도 있는 바
-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처리방법에 대한 철저한 홍보가 요구됨

마. 관련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6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99.2.8 삭제)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정 태 순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2회 이상에서 년1회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한다고 했는데, 쓰레기문제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답)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감독횟수를 년1회 이상으로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지도감독 횟수를 더 늘릴 수 있으므로 지도감독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문) 골목의 무단투기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할아버지 감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답) 현재 추진을 위해 검토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8.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8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개정이유

- 기존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수입증지조례 중 행정편의 규제성을 띤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1조 단서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을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으로 수정하여 구체적이며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안 제1조 단서)

다. 개정근거

- 2000년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00.10. 4)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的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 조례 내용상의 변경은 없이 조례문구 중 행정편의 위주로 구청장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부여한 자구를 열기사항으로 수정코자 하는 안임

나. 개정 골자

- 구에 납부하는 각종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로 납부하되 다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안은 현금 납부도 가능하다는 규정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기하는 식으로 개정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 수수료의 변경 등의 사유로 수입증지의 납부가 불가능할 때에는

다. 개정대상 조례의 요지

- 종로구수입증지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28조에 근거하여 1988년 5월 1일자로 제정하여 1994년, 1999년 등 3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고 전문 12조 및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음
- 수입증지 첨부대상 민원은 조례에 의한 수수료, 호적 및 주민등록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로 규정하고 있고
- '94년부터는 수입증지와 병행해서 인증기로도 납부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 20원, 50원, 60원,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00원, 450원, 500원, 550원, 600원, 750원, 1,000원, 5,000원, 1만원 등 17종을 발행하며
- 수입증지와 인증기 취급 공무원 지정 및 책임을 규정하고
- 일일 판매상황보고와 결산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임

라. 심의 참고자료

<본조례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 ①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 수입현황>

(단위:천원)

년도	총수입액	수입증지 수입						인증기 수입	
		소계	10,000	5,000	1,000	500	기타	소계	점유율
계	3,796,062	822,107	571,420	95,800	101,258	10,150	43,479	2,973,955	78.3
2000	1,393,017	325,483	200,800	57,750	54,550	4,350	8,033	1,067,534	76.6
1999	1,267,280	246,145	183,020	21,600	20,758	3,150	17,917	1,021,135	80.5
1998	1,135,765	250,479	187,600	16,450	25,950	2,650	17,829	885,286	77.9

<수입증지의 인쇄 및 보관>

- 인쇄기관 : 한국조폐공사
- 발주·검수 : 재무과장
- 보 관 : 한빛은행 구금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 '94.2.25~'97.5.16까지 판매인을 지정하였으나 수익관계로 포기하여 현재는 없음(시 상조회)

<인증기 보유현황>

총보유대수	민원봉사실	지적과	교통행정과	여권과	보건소	동사무소
32	7	2	1	1	1	20

마. 검토의견

- 행정편의 위주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정 병 환 위원, 오 금 남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문) 현 조례 제1조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수입증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된 적이 있습니까?

답)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 그렇다면 굳이 수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이 조항은 행정 편의적인 사항이어서, 주민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순화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9.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結果報告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2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내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도시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안) 및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안)을 수립, 공람 공고하였기에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7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자연경관지구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지역→제1종 일반주거지역)

명칭	구분	연번	위 치	면 적(m ²)		
				변경전	변경후	증감
계			4개 지역			감 27,626.2
인왕지구	변경	소계	3개 지역	751,925.9	730,229.8	감 21,696.1
		1	팔판동 115-1 일대			감 11,490.6
		2	삼청동 20 일대			감 4,046.5
		3	삼청동 27-3 일대			감 6,159.0
성북지구	변경	4	혜화동 5-50 일대	1,761,114	1,755,183.9	감 5,930.1

○ 자연경관지구내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

연번	지구명	위 치	면적(m ²)	건축규제사항
계		12개 지역	68,338.1	건축규제완화관리지역
1	평창지구	평창동 154-1 일대	7,603.0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 15미터이하
2	"	평창동 148-21	1,303.0	"
3	"	평창동 296-2 일대	9,431.0	"
4	"	신영동 5-1 일대	2,998.0	"
5	"	신영동 10-1 일대	4,576.0	-건폐율: 40%이하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 15미터이하
6	"	신영동 72-2 일대	5,022.0	"
7	"	신영동 130-1 일대	4,865.0	"
8	"	홍지동 93-2 일대	13,208.0	"
9	"	구기동 54-3 일대	11,686.0	-건축물의 높이: 4층이하, 15미터이하
10	인왕지구	청운동 12 일대	1,171.3	"
11	"	청운동 52-58 일대	2,050.9	"
12	"	삼청동 157-83 일대	4,473.9	"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박 종 식 위원, 안 재 흥 위원, 오 금 남 위원)

(답변자: 하 철 승 도시관리국장)

문) 공람공고시 결정권을 가진 서울시에서 우리 구(안)에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하는데 이 (안)을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서울시에서도 이 지역의 풍치지구 해제가 합리적이란 것을 판단하고 있으나, 이 지역을 해제함으로써 다른 풍치지구 지역주민들의 요구나 민원이 연쇄반응으로 예상되어 반대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수많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이 지역의 해제와 건축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지역이고 녹지와도 멀리 떨어져 있고 고도제한구역이라 높이에도 별 무리가 없어 조망이나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문) 이 안이 지난 20~30년 동안 부당하게 규제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풀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의 반대에 관철할 대안은 있습니까?

답) 이 안 자체가 포괄적이고 여러 지역에 걸쳐 있어서 시에서는 합리적이라 해도 상정하여 통과하는데 애로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의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을 찾아뵙고 최대한 설득 노력하겠으니, 주민들과 의원님들도 큰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4. 意見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10. 도시계획사업(도로) 보류결정에 따른 재검토(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結果報告書

2001. 3. 19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2월 22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1년 3월 6일
- 다. 상정일자 : 제109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2001. 3. 16) 재무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도시관리국장 오 종 석)

가. 제안이유

- 도시계획 선형변경(10→8m)을 추진하였으나 보류결정으로 사업시행 곤란
- 도시계획상 10m도로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8m이상(약 100m) 도로폭이 확보되어서 현 상태로 주민 및 차량통행에 커다란 지장이 없으며
- 기타 구간(80m)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현황 7m이상 도로로 현재 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2002년 4월경에 도로공사 착공예정으로 있어 본 사업을 보류하고
- 본 구간과 인접 구간인 송인동 411-324구간으로 사업지역을 변경시행

나. 주요골자

- 공사명: 송인동 411-431간 도로개설공사(B=10m, L=180m)
 - 본 사업 보류결정으로 기 책정된 사업예산 약 4억원을 우선 송인동 411-324구간(B=6m, L=110m) 도로개설 공사 예산으로 전용코자 함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오 금 남 위원, 안 재 홍 위원)

(답변자: 오 중 석 건설교통국장)

문) 송인동 411-324간의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원활하고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답) 이 곳은 신설동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차량이 성북, 보문동을 우회하여 시간과 물질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필요한 곳입니다.

문) 이 도로개설 공사 예산으로 약 4억원이면 할 수 있는지와, 이왕이면 8m~10m 도로를 확보하여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답)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있어 별도로 도시계획과와 협의하겠습니다.

4. 意見 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